

제322회 정례회

2013. 7. 3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6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25일

3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(2012. 8. 23. 시행)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추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추가
(안 제4조)

-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
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(안 제8조의2)

-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영 개선방안 권고 사항

다. 재난관리기금 분임 기금운용원 지정(안 제7조)

- 분임 기금운용원 : 재난업무 담당과장

라. 위촉직 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 신설(안 제10조2)

마. 띄어쓰기와 용어를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

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그 동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라 주로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성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,
- 재난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, 피해자들이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'12. 11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'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'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'13. 6. 4. ~ 6. 18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